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안)

재산의 표시 (토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21-3, 대, 78㎡ 중 60.4㎡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부산광역시(이하 ‘대부자’라 한다)와 대부받는 자 신재호(이하 ‘대부받는 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부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상업용(주차장)**으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 **금낙찰금액원(금낙찰금액원)**으로 한다. 다만,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2차연도 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이 계약체결에 따른 대부료는 낙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납부한다. 분할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신청과 같이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받는 자의 의무)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의무와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이 경우 “대부받는 자”는 제3조에 따른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행위제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설치한 “대부받는 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7조(대부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해제) ①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대부받는 자”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 기준으로 “대부자”가 결정하고, “대부받는 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8조(대부받는 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해제) ① 이 계약기간 중 “대부받는 자”가 계약의 해지·해제를 요청하려면 1개월 전에 문서(계약해지요청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자”가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대부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9조(기간만료 등에 따른 해지·해제)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을 회복하여 “대부자의 소속직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대부의 재신청) 대부기간 만료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으려면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대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의 징수)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책임) ① “대부받는 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대부재산이 “대부받는 자” 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은 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대부받는 자”는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객관적 손해를 끼친 때에는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대부자

성명 부산광역시장 (인)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대부받는 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부산광역시

전화번호 010- -